

# KS인증 및 단체표준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개정

## -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중개정령 공포』 -

산업자원부는 한국산업규격 인증(이하 'KS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민간부문의 단체표준 운용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선진국형 표준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을 개정, 2004.5.28일자 공포하였음.

(첨부.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KS인증제품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술변화 현실에 맞게 개정함.

- 현행 KS인증을 받은 제품은 그 품질 수준에 관계 없이 5년마다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 2005.1.1 부터 심사결과에 따라 '3년 내지 5년'으로 차등화된 기간내에 차기 정기심사를 받아야 함.

- KS인증제도는 1961년 산업표준화법 제정 이래 우리나라 광·공업품의 품질향상에 기여해 온 바가 크고 일반 소비자들에게 인지도가 높아 Ⓜ마크가 있는 제품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산업기술 발전속도가 가속화 되고 있는 추세에 부응하여 KS제품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기심사 주기가 조정된 것

■ 또한, 소비자가 KS인증제품을 사용하다 제품결함 등의 문제를 인증기관에 제기하면 인증기관은 사실확인 후 KS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교환, 수리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을 강화함으로써 리콜제도를 개선하였음.

- 기존에는 규격미달 제품에 대한 '교환, 수리'만 가능 하였으나, 소비자보호법·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등 소비자 안전관련 법령에서와 마찬가지로

'환불'까지 가능하도록 개정한 것임.

■ 아울러, 산자부는 국가표준인 KS 뿐만아니라 그간 민간부문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단체표준에 대해서도 2004.9.1부터 정보통신망에 게재토록 함으로써 민간표준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함과 더불어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과의 연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 표준분야의 선진국인 유럽·미국 등은 급변하는 국제표준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민·관이 국제표준 제정에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는 반면, 우리는 아직 민간부문의 표준화 활동이 미미하고, 단체표준 개발 활동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 잠정통계에 의하면 국내의 단체표준은 18,000여종이나 되는 국가표준의 1/10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이는 단체표준의 수가 국가표준의 수를 압도하는 선진국과 대조됨.

- 이러한 현실에서 단체표준의 정보통신망 게재는, 산재되어 있는 민간부문의 표준 실태를 정비하여 체계화함으로써 국제표준화 활동에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업종별 유관단체에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비슷한 표준을

중복 제정하는 데에서 오는 손실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번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개정은 산업표준에서의 민

간의 역할을 강조하고 KS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가 표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 <참고>

#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 'KS 인증제품'에 대한 정기심사 주기의 차등화

- 품질수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년으로 되어있는 정기심사(공장심사 및 제품심사)주기는 KS인증제품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고 상대적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므로,
  - KS인증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업계의 부담을 고려하여 주기를 정기심사 결과에 따라 3년 내지 5년의 기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 (제21조제1항)
  - '3년 내지 5년의 기간은 기술표준원장이 정기심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심사등급별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 단체표준제도의 활성화

- 단체표준인증단체가 단체표준을 제정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망에 단체표준을 게재하고, 단체표준의 제정 및 단체표준 인증의 심사 등을 위하여 단체표준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함(제23조제2항 내지 제5항)
- 보조금 교부대상 사업에 단체표준의 제정, 운영 및 보급에 관한 사업 추가 (제26조제5호)
  - '0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민간표준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단체표준의 제정·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임

### □ 규격 미달제품에 대한 리콜 제도 보완

- KS인증 제품이 규격에 맞지 아니하여 인증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인증기관은 사실여부를 조사한 후 인증받은 자로 하여금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당해 규격표시제품을 교환·수리 또는 환불해 주도록 요청하여야 함. (제20조제2항)

### □ KS 인증심사기준 및 공장심사·제품심사의 적정화 도모

- KS인증을 받은 자가 당해 제품이나 가공기술이 한국산업규격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는 경우 규격에서 품목별 특성에 따라 정하는 사항도 표시하도록 함 (제13조제1항제8호)
-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중 기술사를 박사학위 소지자와 동일한 자격으로 인정 (별표 2)
- 외주가공을 허용하는 공정에 대해서는 규격별 심사기준에서 그 범위를 정하도록 함 (별표 9)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경영체제 인증을 받은 자가 KS인증 신청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해 심사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 (별표 10)

## <부 칙>

※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개정규정(단체표준의 제정 등)은 각각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1항제8호(규격표시사항)·제21조제1항(정기심사 주기의 차등적용)·별표9 및 별표10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정기심사주기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정기심사로서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